

(의정부경전철 여객운송약관 신구조문대비표) - 시행일 : 2024.01.27.

기 준	변 경
<p>제9조(운임의 감면) 회사는 다음과 같이 운임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노인복지법 제26조에서 정한 노인은 무임으로 합니다. 2.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5조제1항 및 5·18민주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제2항에 정한 사람은 무임으로 합니다. 3.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정한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승하는 1인은 무임으로 합니다. 4. 그 밖의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기간을 정하여 운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. 	<p>제9조(운임의 감면) 회사는 다음과 같이 운임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노인복지법 제26조에서 정한 노인은 무임으로 합니다. 2.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5조 제1항 및 5·18민주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정한 사람은 무임으로 합니다. 3.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정한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승하는 1인은 무임으로 합니다. 4. <u>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7조의4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은 무임으로 합니다.</u> 5. 그 밖의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기간을 정하여 운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.

(의정부경전철 여객운송약관 신구조문대비표) - 시행일 : 2024.01.27.

기 존	변 경
<p>제10조(여객의 구분) ① 여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합니다.</p> <p>1. ~ 6. <기존과 동일></p> <p>7. 유공자</p> <p>가. 국가유공상이자 :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6조제1항에 정한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.19혁명 부상자,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</p> <p>나. 독립유공자 :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애국지사</p> <p>다. 5·18민주유공상이자 :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8조제1항에 정한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</p>	<p>제10조(여객의 구분) ① 여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합니다.</p> <p>1. ~ 6. <기존과 동일></p> <p>7. 유공자</p> <p>가. 국가유공상이자 :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6조제1항에 정한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.19혁명 부상자,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</p> <p>나. 독립유공자 :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애국지사</p> <p>다. 5·18민주유공상이자 :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8조제1항에 정한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</p> <p><u>라. 보훈보상대상자 :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사람</u></p>

(의정부경전철 여객운송약관 신구조문대비표) - 시행일 : 2024.01.27.

기 존	변 경
<p>제12조(여객운임 적용) ① 편도여객운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합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3. <기존과 동일> 4. 다음의 여객은 무임으로 합니다.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에 정한 여객 나. 다음의 사람을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동승하는 보호자 1인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1)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(2)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애국지사 (3)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5.18민주유공상이자 (4) 장애등급 1~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5. 법령 또는 회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. 	<p>제12조(여객운임 적용) ① 편도여객운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합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3. <기존과 동일> 4. 다음의 여객은 무임으로 합니다.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에 정한 여객 나. 다음의 사람을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동승하는 보호자 1인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1)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(2)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애국지사 (3)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5.18민주유공상이자 <u>(4)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</u> (5) 장애등급 1~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5. 법령 또는 회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.

(의정부경전철 여객운송약관 신구조문대비표) - 시행일 : 2024.01.27.

기 존	변 경
<p>제23조(승차권의 확인·반납·제시 및 신분증명서의 제시)</p> <p>① <기존과 동일></p> <p>② 여객은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승차권을 제시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승차권이 신분증명서 등의 휴대를 필요로 하는 것일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.</p> <p>1. 청소년카드 : 청소년증, 학생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</p> <p>2. 우대용 1회권 및 우대용교통카드</p> <p>가. 노인 : 주민등록증, 재외국민거소신고증, 운전면허증</p> <p>나. 국가유공자 : 국가유공자증</p> <p>다. 독립유공자 : 독립유공자증</p> <p>라. 5·18민주유공상이자 : 5·18민주유공자증</p> <p>마. 장애인 : 장애인복지카드</p> <p>바. 그 밖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</p>	<p>제23조(승차권의 확인·반납·제시 및 신분증명서의 제시)</p> <p>① <기존과 동일></p> <p>② 여객은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승차권을 제시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승차권이 신분증명서 등의 휴대를 필요로 하는 것일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.</p> <p>1. 청소년카드 : 청소년증, 학생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</p> <p>2. 우대용 1회권 및 우대용교통카드</p> <p>가. 노인 : 주민등록증, 재외국민거소신고증, 운전면허증</p> <p>나. <u>유공자 : 국가보훈등록증, 국가유공자증, 독립유공자증, 5·18민주유공자증, 보훈보상대상자증,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</u></p> <p>다. 장애인 : 장애인복지카드</p> <p>라. 그 밖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</p>